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최승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61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3. 8.

발 의 자 : 최승재 · 배진교 · 최재형
김근태 · 김희곤 · 김종민
윤주경 · 양정숙 · 최영희
김예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,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,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,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

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).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”를 “,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”로 한다.

제3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임원, 지부장, 심의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법은 대한민국상 이군경회, 대한민국전몰군경유 족회,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 회, 광복회, 4·19민주혁명회, 4· 19혁명희생자유족회, 4·19혁명 공로자회, 재일학도의용군동지 회 및 <u>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</u> 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(相扶相助)하여 자활(自活) 능력을 기르고 순국 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 (遺志)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 (宣揚)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, <u>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</u> 및 <u>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</u>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조(회원) 다음 각 호의 단체 (이하 “국가유공자등단체”라 한 다)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 다.	제3조(회원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
1. ~ 9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9. (현행과 같음) <u>10.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5호 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군인의 유족</u>
--	--